

● 제289회 ●
서울특별시의회(임시회)
제2차 보건복지위원회

서울특별시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검 토 보 고 서

2019. 9. 3.

보건복지위원회
수석전문위원

【오현정 의원 대표발의】

의안번호 861

I. 조례안 개요

1. 제안경위

- 가. 제 출 자 : 오현정 의원 대표발의(외 23명 공동발의)
- 나. 제출일자 : 2019년 8월 7일
- 다. 회부일자 : 2019년 8월 13일

II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1. 제안이유

- 가. 아파도 쉬지 못하는 근로소득자 및 사업소득자들의 입원치료에 대한 일실손해액보장을 통해 입원치료기간 동안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 적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제안된 “서울형 유급병가” 제도의 시행을 명확히 하고자 “서울형 유급병가지원” 으로 변경하고자 함.
- 나. 비정규직,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의료보장제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행정 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해 지원 대상자를 적절하게 선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“서울특별시 서울형 유급병가지원에 관한 조례”로 제명을 변경함.
- 나. 제도의 명확한 시행을 위해 용어를 서울형 유급병가지원으로 변경함 (안 제1조, 제2조제1호, 제3조제2항, 제5조, 제7조제2호~제3호).
- 다. 서울형 유급병가지원의 지원대상자의 적정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6조제2항~제3항).
- 라.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자문위원회 설치, 기능,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7조, 제8조제1항, 제8조제3항~제6항)
- 마.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자문위원회 위원장 등의 직무를 규정함(안 제10조제4항)
- 바.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자문위원회 위원의 해촉을 규정함(안 제12조제1호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사회보장기본법」, 「전자정부법」
- 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참조
- 다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 참조

Ⅱ. 검토의견 (수석전문위원 이문성)

1 개정안의 취지

- 개정안은 아파도 쉬지 못하는 근로소득자 및 사업소득자들의 입원치료에 대한 일실손해액보장을 통해 입원치료기간 동안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 적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제안된 “서울형 유급병가” 제도의 시행을 명확히 하고자 “서울형 유급병가지원” 으로 조례의 제명 및 제도명을 변경하고 비정규직,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의료보장제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행정 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해 지원 대상자를 적절하게 선정하고자 제안되었음.

2 개정안의 주요내용 검토

가. 조례의 제명 변경과 관련하여

-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제도는 영세자영업자 등에게 질병치료를 위한 입원이나 건강검진을 위해 병원에 내원하는 경우 해당 일수의 일실손해액의 일부를 보장해 주는 제도로 사회보장급여의 하나로 이해할 수 있음.
-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는 경우 「사회보장기본법」에 따라 사회보장위원회에 신설·변경 협의를 해야 하며 이 결과를 토대로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 할 수 있음.
- 사회보장위원회는 공문[사회보장조정과-4849]을 통해 유급병가제

도에 대한 신설협의를 완료하였음. 다만 아래와 같은 검토의견을 제시한 바 있음.

- 근로기준법 상의 고용 보호를 받고 있지 못한 저소득 비정규직 및 자영업자의 소득보전 및 건강권을 부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타당성이 인정됨
- 기존 제도와의 관계에서 유사급여 대상자(기초수급자, 긴급복지, 실업급여, 산재보험 등)를 제외하고 있어 중복 지원의 문제도 없음
- 다만, 시범사업 성격을 가지고 있고, 1년 미만 정규직 근로자의 유급휴가가 11일인 점을 감안하여 지원기간 등을 조정할 것을 권고

* 시범사업 성격이므로 시행 후 이용추이 등 분석 평가 필요

< 권고 사항 >

- (지원기간) 사업 초기인 만큼 지원기간을 근로기준법상(제60조)의 1년 미만 연차유급휴가 기간을 준용(최대 11일, 건강검진 포함)
- (전달체계) 본 사업의 목적이 생계가 어려운 대상자에 대한 소득보전사업으로 보건소 보다는 읍면동을 중심으로 전달체계를 운영하고,
- 저소득 근로자 등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에 맞는 사업명(예: 유급휴가지원 등)으로 변경할 것을 권고

나. 행정정보의 공동이용과 관련

-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1)에 따라 행정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정보를 공유하여 유급병가 신청자

1) 제36조(행정정보의 효율적 관리 및 이용)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수집·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필요로 하는 다른 행정기관등과 공동으로 이용하여야 하며, 다른 행정기관등으로부터 신뢰할 수 있는 행정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같은 내용의 정보를 따로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.

로 하여금 행정적인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제안되었음.

- 이에 따라 행정정보가 공동이용이 가능하다면 서울형 유급병가를 신청하는 데 필요한 행정서류 9종 중 6종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제공되어 관서 등에서도 불필요한 부담이 작아지며 효율적인 행정이 가능할 것으로 여겨짐.

-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: 구비서류 9종중 6종
 - 주민등록표 등·초본,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, 건강검진결과통보서,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서, 사업자등록증명, 입금계좌확인정보(신청인 통장사본)
-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 제외: 3종
 - 가족관계증명서(대법원 법원행정처: 행정정보 승인 불가), 가족관계 단절 사유서(해당자), 임대차 계약서(해당자)

3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제도 운영 관련

가. 서울형 유급병가제도 수급 현황

- 서울형 유급병가제도가 2019년 6월 시행되었으나 홍보의 부족 또는 제도에 대한 시민의 인식 부족 등으로 인해 지난 3개월간 적절하게 운영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임.
- 지난 3개월 동안 실제로 급여를 지급받은 사람은 4명에 불과한 상황으로 유급병가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있다고 할 수 있음.
 - 이에 행정정보의 공동이용등을 통해 신청 및 수급절차를 간소화 할 수 있다면 이에 대한 대책이 될 수 있음. 그러나 서울형

유급병가지원제도의 수급요건 완화 등도 일부 고려가 필요한
 상황으로 여겨짐.

구 분	신 청(단위:건)				지 급	
	계	6월	7월	8월	건수(단위:건)	금 액(단위:원)
계	65	11	42	12	4	2,110,680
중 로	2	2	0	0		
중 구	0	0	0	0		
용 산	1	0	1	0		
성 동	3	0	3	0		
광 진	1	0	1	0		
동대문	3	1	2	1	1	81,180
중 량	5	1	4	0	1	811,800
성 북	0	0	0	0		
강 북	3	1	2	1	1	405,900
도 봉	5	0	5	0		
노 원	3	0	3	0		
은 평	3	1	2	1		
서대문	5	0	5	0		
마 포	2	1	1	1		
양 천	2	0	2	0		
강 서	3	0	3	5		
구 로	1	0	1	2		
금 천	2	2	0	0		
영등포	0	0	0	0		
동 작	0	0	0	0		
관 약	2	0	2	0		
서 초	1	0	1	0		
강 남	0	0	0	0		
송 파	4	1	3	1	1	811,800
강 동	2	1	1	0		

나. 유급병가 심의위원회의 운영과 관련

- 동 조례 개정안에는 유급병가지원 자문위원회를 10명에서 20명으로 확대 운영하는 안을 제안하였음. 유급병가지원 자문위원회는 유급병가지원제도와 관련한 기본계획의 심의, 지침의 개발 및 개정, 그 밖에 유급병가지원에 대한 사항을 조정할 수 있는 자문기구로 추후 유급병가지원제도의 실행실적에 따라 급여조건의 변경 등을 논의할 수 있는 기구로 여겨짐.
- 민간전문가의 참여를 보장하고 독려하는 의미로 평가할 수 있음.

4 종합의견

-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 행정정보의 공동 활용, 제도명의 정비, 유급병가 자문위원회의 확대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모두 개정에 있어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임.
- 그러나 “구슬이 서 말이어도 꿰어야 보배”라는 속담처럼, 서울형 유급병가제도의 수급실적이 떨어지는 점에 대하여 제도가 가진 본래의 목적이 달성 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집행의지가 중요할 것이라 할 것임.